

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 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9. 12. 24(목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9. 11. 5

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9. 11. 5

라. 상정일자 : 2009. 12. 18(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)

- 제안설명 : 건설교통국장 홍준호
- 검토보고 : 건설교통전문위원 김동호
- 질의 및 토론
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폐지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의 적립기간(1984년~ 2005년)의 종료 및 적립된 기금 고갈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,
- 우리시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(교통연수원)의 운영자금을 당초 『기금』에서 『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』로 변경하여 지원하고자함.

나. 주요내용

-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를 폐지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- 동 조례안은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례로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폐지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동 조례안이 한시적인 조례로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원안가결하고자 함.

5. 토론요지

가. 찬성 : 강문기, 노경수, 박승희, 성용기, 이재호, 이은석 위원

나. 반대 : 없음

6. 수정안 요지

- 해당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 : 6명)

8. 기타 특이사항

- 없음

붙임 :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이용조례 폐지
조례안 1부. 끝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 금적립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
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제11호를 삭제한다.